

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- 가. 제안이유
-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
출연대상	서울신용보증재단
출연목적	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출연금	400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

단에 4억원을 출연하고, 출연금의 12.5배에 해당하는 50억을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임.

○ 검토결과,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신용보증재단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이며,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최근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통화정책, 고금리 장기화로 기인하여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 또한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.
- 따라서,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44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
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목적: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(재정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 (기금의 용도)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 (기본재산)

다. 개 요

1) 출연금 지원계획

(단위: 천원)

출연기관	출 연 금	보증규모	사 업 명
서울신용보증재단	400,000	5,000,000	특례보증 지원사업

2) 신용보증재단 출연 필요성

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 유통 지원
- 출연금의 12.5배 한도로 보증 지원
 - ※ 4억원 출연 ⇒ 50억원 한도 신용보증 지원
 - ※ 금융기관 연계 출연(매칭출연)시 보증한도 확대 가능